

# 윤리실천특별약관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PS 테크 또는 포스코 PS 테크의 거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당사자(이하 쌍방을 지칭할 때는 “양당사자”로 표기하고, 어느 일방만을 지칭할 때는 “당사자”로 표기한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양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 제 3 조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의무)

- ① 양당사자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 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은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뇌물거래방지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 4 조(상호간의 윤리규범 준수 의무)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상대방에게 윤리규범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은 전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윤리규범을 숙지한 후, 회사의 전항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양당사자는 서로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윤리규범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5 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 ④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 또는 경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5.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 6. 제 3 조 1 항의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7.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 및 회사 임직원에게 위법을 강요, 조장하는 행위
-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 또는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회사는 상대방이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 1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 십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물량 또는 거래규모를 제한하거나, 제 1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 1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 십만원이상 1 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 1 호의 제재 및 제 1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 1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 1 호, 제 2 호의 제재 및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 없이 상기 제 1 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상대방의 참가 제한

④ 제 3 항 2 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 1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자재구매, 설비구매, 공사, 외주, 운송하역, 원료구매, 판매 등)이 동일하고, 동시에 회사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경조화환,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 3 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횡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회사는 상대방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상대방과의 당해 거래 또는 모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상대방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 3 항과 제 7 항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상대방은 제 1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에 관련내용이 계열사의 공급사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

## **제 6 조 (면책)**

- ① 비윤리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따라 면책 및 보상을 시행한다.
- ② 면책 이후라도 면책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면책 및 보상을 취소하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 7 조 (경과조치)**

본 약관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 약관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